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9. 08. 19.
제 출 자 : 유인환의원외 5인

1. 주 문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심사기간은 2009년 08월 24일 1일간으로 한다.

2. 제안이유

가. 평창군수가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3. 참고사항 : 없 음

심 사 계 획

1. 활 동 목 적

○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신속한 의사진행

2. 심 사 안 건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평창군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보류안)

○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 지원 조례안

○ 평창군 물 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

3. 활 동 기 간

○ 2009년 08월 24일 1일간으로 한다.

4. 구 성

○ 최귀녀의원, 이만재의원, 유인환의원, 함명섭의원, 심재국의원, 김진석의원

5. 운 영 계 획

일 시	차 수	내 용	비고
08.24 (월)	제1차 조례특위 (13:30)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안) 8.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8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 지원 조례안 10. 평창군 물 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	